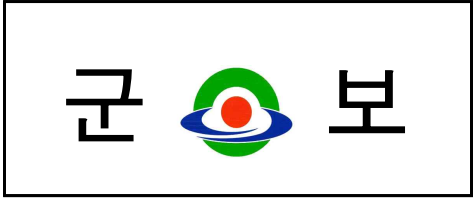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658호 2025. 10. 28.(화)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선<br>람 | 기<br>관<br>의<br>장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|

공 고

○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5-1440호)

|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<br>람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71)

##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0월 28일

예 천 군



### 1. 조 례 명 : 예천군 건축 조례

### 2. 개정이유

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조의2)

○ 적용 범위

-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위원장이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나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특례 조항 신설(안 제25조제4항)

○ 적용 대상 :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시행인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각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

- 일반주거지역 : 3배 이하
- 준주거지역·준공업지역 : 4배 이하

※ 다 : 「2024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(2)」 관련 사항 반영{기획예산실-16786(2024. 12. 9.)}

### 4. 개정조례안 : 별첨

### 5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건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| 정(안) | 수 정(안) | 수정사유 |
|------|--------|------|
|      |        |      |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dbgusdn6050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건축과

3) 팩스 : 054-650-635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축과(전화 : 054-650-6353)에 문의하여

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[www.ycg.kr](http://www.ycg.kr))

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

□ 자치법규명 : 예천군 건축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| 정(안) | 수 정(안) | 수정사유 |
|------|--------|------|
|      |        |      |

##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전문위원회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.

②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장이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한다.

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, 전문위원회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주거지역: 3배 이하

2.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: 4배 이하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&lt;신 설&gt;</u> | <p><u>제3조의2(전문위원회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장이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p><u>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<u>④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, 전문위원회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⑤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 |



제25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① ~ ③ (생략)

<신 설>

제25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주거지역: 3배 이하
2.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: 4배 이하